

# 검 토 보 고 서

(2007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형열

# 2007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문위원 김형열 입니다

- 「2007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 토지취득 : 57필지 121,567㎡ 149억 9,874만원
  - 건물신축 : 4동 15,830㎡에 300억 원을 투자 하는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하는 안건입니다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광석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이전하여 건립하는 대상 부지의 취득과 건물 건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전 대상지는 은현면 도하리 682일대에 농경지등 121,567㎡를 협의 매수하여 건물 15,830㎡를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계획을 보면 2008년 1월중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광석택지개발지구 보상금을 수령하여서,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2009년 7월경에 건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계획에서 취득재산의 장점으로 지방도375호선과, 추진 중인 덕계-도하간 민자도로등으로 접근성이 편리하며, 위치적으로 주변 농업인들과 교류가 편리한 농업의 중심적 위치이고, 주변에 신천 및 저수지등이 위치하여서 수원 확보에 편리하여서 생태습지 조성 및 시험재배등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서 염두에 둘점은 교통, 주변환경등 입지여건과 관련법상 용도지역이 적합 한지를 세밀히 살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상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해지하지 아니 하고는 취득할수 없습니다

- 이용계획상에도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할것입니다
-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대상 사업계획에 적정한 면적인지와 시설의 이용도는 타당한지등은, 타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지역 농업규모와 여건등을 살펴서 과잉 또는 과소 규모는 아닌지, 적합한 입지 여건인지등을 살펴서 계획을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